

●보건복지부공고 제2026-759호

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99조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이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아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70조의4(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)에 의거 과징금 체납자에게 독촉장 및 고지서를 우편(등기)으로 송부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,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 제4항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공고(공시송달)합니다.

2026년 10월 06일
보건복지부장관

체납 과징금 독촉 고지 공시송달

- 1. 제목: 체납 과징금 독촉 고지 공시송달
- 2. 근거: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(공시송달), 제15조(송달의 효력의 발생)
- 3. 공고기간: 2026. 10. 6. - 2026. 10. 20.
- 4. 공고 대상자

당사자(대표자명)	생년월일(법인번호)	미납액	최초납부기한	우편 수령지	반송일자
동산의원(폐업,이0일)	680226-1*****	36,383,120원	2024-11-20	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동림용산로 00 (이하생략)	2026.7.27.
강북권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명성의원(폐업,김0구)	260151-0025774	7,424,280원	2024-11-20	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구 도봉로 152길 00(이하생략)	2024.12.16.
연세부천의원(폐업,염0섭)	660925-1*****	968,045,800원	2026-04-20	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이로 00(이하생략)	2026.7.27.

5. 공고내용

- 가. 체납 과징금 납부 안내: 우리 부에서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9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고 독촉장 및 고지서를 송부하였으나, 등기우편물 반송(폐문부재)으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. 이에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에 의거 공시송달하오니 당사자(체납자)는 기 발부된 납입고지서(납기무관)를 통해 공고 기간 내에 체납 과징금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- 납부방법: 납입고지서를 지참하여 은행 또는 우체국 등 수납기관을 방문하시거나, 인터넷뱅킹(모바일뱅킹)으로 납부하실 수 있으며, 고지서를 분실하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(044-202-2781)로 연락하여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.
- 나. 미납시 조치사항: 만약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「국세징수법」 제24조에 의거 과징금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(예금, 부동산, 자동차 등)의 압류 등의 강제징수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.
- 다. 송달 효력 발생: 본 공고 시작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「행정절차법」 제15조에 따라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며, 이에 따라 독촉장이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.
- 라. 문의사항은 보험평가과(044-202-2781)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